

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55,889,554	13,676,687
일반회계	423,158,448	12,694,753
특별회계	32,731,106	981,933
공기업특별회계	22,379,719	671,39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530,273	285,908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2,849,446	385,483
기타특별회계	10,351,387	310,542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883,997	56,520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025	31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2,225,495	66,765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3,084,670	92,540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156,200	94,686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2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1년 명시이월 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762,63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